

장학금 지급 규정

제정 1986.12. 3	개정 1992. 3. 1	개정 2001. 8. 1	개정 2017. 3. 1
개정 1987. 3.24	개정 1994.12.26	개정 2004. 3. 1	개정 2020. 9. 1
개정 1989. 1.15	개정 1996.10. 1	개정 2006. 3.29	개정 2022. 4.14
개정 1989. 5.29	개정 1997.12. 1	개정 2009. 3.24	개정 2023.12. 1
개정 1989. 7.24	개정 1999. 3. 4	개정 2010. 3. 1	
개정 1990. 1.15	개정 2000. 3.28	개정 2013. 2.28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55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, 외부장학재단 및 장학금 기부자의 기부조건 등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위원회) 학생생활위원회는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(개정: 2020.9.1.)
2. (삭제: 2020.9.1.)
3. 기타 장학금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

제2장 장학금의 신청

제4조(장학금 신청)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3.2.28.)(개정: 2020.9.1.)

제5조 (개정: 2013.2.28.)(삭제: 2020.9.1.)

제6조(복학생의 장학금 신청) ① (삭제: 2020.9.1.)

② 휴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학생은 복학 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 단,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(개정: 2020.9.1.)

③ 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 시에 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 (개정: 2013.2.28)

제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

제7조(경제사정곤란자 정의) 경제사정곤란자라함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

금을 수혜하는 범위 또는 별도의 서류로 경제적사정곤란자임을 확인한 범위까지를 의미한다. (개정: 2013.2.28.)(개정: 2020.9.1.)

제8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)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내장학금

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탐구, 글로벌 소양 함양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운영한다. (신설: 2020.09.01)

가. 명예장학생: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이나 다른 학생들의 장학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포기하는 학생을 명예장학생으로 선발한다.

나. 지곡장학금: 신입생 중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등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곡장학금을 지급한다. 지곡장학금의 계속 지원 조건은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. (개정: 2013.2.28.)(개정: 2020.9.1.)

다. 성적우수 장학금

1) 신입생: 폐지 (개정: 2013.2.28)

2) 입학성적 우수장학금: 입학위원회에서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하고,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 (개정: 2020.09.01)

3) 경시대회 장학금: 폐지 (개정: 2020.9.1.)

4) 재학생: 폐지 (개정: 2013.2.28)

5) (삭제: 2020.9.1.)

6) 성적우수 장학금의 종류, 선발 및 지급 기준,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: 2020.9.1.)

라. 근로장학금

1) 학기근로장학금: 경제사정곤란자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기 중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학생에게 생활비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. (개정: 2020.9.1.)

2) 시간근로장학금: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의 근로 수행 후 대학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장학금을 지급한다. 월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 내외로 한다. (개정: 2020.9.1.)

3) Student Mentor Program 장학금: Student Mentor Program에 참여하는 Mentor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(개정: 2020.9.1.)

4) Student Advisor 장학금: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, 분반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Advis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(개정: 2020.9.1.)

- 5) Residential College Advisor 장학금: 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Advis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(개정: 2020.9.1.)
- 6) 장학생 선발,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: 2020.9.1.)
- 7) (삭제: 2020.9.1.)
- 마. 면학장학금: 기본장학금 장학생 중 경제사정곤란자에게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,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: 2020.09.01)
- 바. 특별장학금: 재해,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생 선발,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: 2020.09.01)
- 사. 해외연수장학금: 해외 교환학생, 어학연수, 방문학생, 현장학습 및 인턴십 등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단, 장학금의 종류, 장학생 선발,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: 2020.09.01)
- 아. 연구지원 장학금: 학부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생 선발방법, 지급절차 및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13.2.28.)(개정: 2020.9.1.)
- 자. 봉사 장학금: 학생회, 학생자치단체 등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에게 소관부서 처장 또는 주임교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생 선발,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20.09.01)
- 차. 디딤돌 장학금: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단, 장학금 지급대상은 대학에 장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장학금의 지급기준,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20.09.01)
- 카. 기금장학금: 기부자가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. (신설: 2020.09.01.)
- 타. 디지털학업장려금: 디지털 기반의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생 선발, 지급 기준 및 장학 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23.12.1.)
- 파. 위에 명시된 교내장학금 이외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: 2023.12.1.)
2. 교외장학금(개정: 2013.2.28)
- 가. 국가장학금: 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나. 외부장학금: 정부 외의 기관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.

다. 교외장학금의 장학금 선발자격, 인원, 장학금액 등 제반 사항들은 지원기관이 제정한 규정 및 지급지침에 따른다. 단,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부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

제9조(이중수혜 금지) ①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단,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금 및 학업장려비 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장학금 외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. (개정: 2013.2.28)(개정: 2020.9.1.)

②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신설: 2013.2.28)(개정: 2020.9.1.)

③ 이중수혜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. (신설: 2020.9.1.)

제10조(보전 지급)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액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: 2013.2.28)(개정: 2020.9.1.)

제11조(지급방법) 등록금지원장학금은 사전에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등록금 납부기간의 경과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09.01)

1. 등록금 납부기간 중: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
2.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 후: 대학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

제12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. (개정: 2020.9.1.)

①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적변동 후 재적생인 경우 학적변동 전날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9.1.)

② 학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복수전공자는 지극장학금, 면학장학금, 성적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10학기까지 수혜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간근로장학금, 해외연수장학금, 연구지원 장학금, 특별장학금, 기금 장학금은 복수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학사과정 9학기 이상이라도 수혜받을 수 있다. (개정: 2020.9.1.)(개정:2022.4.14.)

③ 모든 교내장학금은 직전학기 10학점 미만을 취득하거나 평균평점 2.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시간근로장학금, 연구지원장학금,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(개정: 2020.9.1.)(개정:2022.4.14.)

- ④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, 장학금 지급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(개정: 2020.9.1.)
- ⑤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: 2020.9.1.)
- ⑥ 신입생이 입학 후 첫학기 휴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군 휴학의 경우 예외로 한다. (신설: 2020.9.1.)
- ⑦ 교외장학금(국가장학금 포함)은 해당 기관이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. (신설: 2020.9.1.)

제13조(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의 결의와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. (개정: 2020.9.1.)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9년 7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1987학년도 입학자에게는 입시요강에 발표된 내용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0년 1월 1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6일 개정, 1994년 9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.
2. 다만, 포항공과대학에서 포항공과대학교, 학장에서 총장, 기획실장에서 기획처장으로의 개정은 1994년 3월 1일 개정,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1996학년도 입학자는 재학 중 1회 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 개정하여,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도 3월 28일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도 3월 29일부로 개정하여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도 3월 24일부로 개정하여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도 3월 1일부로 개정하여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로 개정하여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2. 다만, 학기성적 우수장학금 폐지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도 4월 14일 개정하되, 2022년 2월 21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도 12월 1일 개정, 시행한다.